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한 일 용 의원)

의안 번호	21-45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: 2021. 4. 12.

발의자: 강명숙, 권영숙, 김성희, 김영미,  
김진천, 이민석, 이홍민, 신종갑,  
정혜경, 조영덕, 한일용

## 1. 개정이유

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시설의 정의에 ‘학원’ 추가(안 제2조)
- 나.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어린이, 보호자 등 이용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 신설 (안 제5조제2항)
- 다.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9조의2)

## 3. 관계법령

- 가. 도로교통법 제12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1. 4. 9. ~ 4. 14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제3호”를 “제3호, 제4호”로, “보육시설”을 “보육시설, 학원”으로 한다.

4. “학원”이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(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)을 말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)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

립하도록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4. “교육시설”이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.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5조(실태조사)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학원”이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(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4조 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)을 말한다.</p> <p>5. ----- 제3호, 제4호----- 보육시설, 학원--.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제5조(실태조사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의2(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)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</p>

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도로교통법

[시행 2021. 1. 12.] [법률 제17891호, 2021. 1. 12., 일부개정]
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. 28., 2014. 11. 19., 2015. 7. 24., 2017. 7. 26., 2018. 3. 27.>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
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·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

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

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  
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7.>

④ 시·도경찰청장,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24., 2020. 12. 22.>

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24.>

1.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
2.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
3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
4. 그 밖에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

[전문개정 2011. 6. 8.]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위한 조례**  
**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제5조 제2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 
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**3. 미첨부 사유**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박준홍
연 락 처	02-3153-9642